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서 울 고 등 법 원

춘천제2행정부

판 결

사 건 (춘천)2016누1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redacted]시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구합781 판결

변론종결 2016. 6. 13.

판결선고 2016. 7.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912,300원, 농어촌특별세 1,491,2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미지급 잔금의 액수 및 규모를 고려하면 원고들이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는 (물론 미지급 잔금의 액수 및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미지급 잔금의 액수' 및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외에 그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유 등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려고 했던 목적, 미지급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원고들이 계약을 완료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위를 포기 또는 C에게 양도하게 된 경위, 그 포기 또는 양도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미지급 잔금의 액수 및 규모만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원고들이 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박병규

판사 이희경